

“임기 마지막 날까지 도정 누수 없이”

김관영 도지사, “유종의 미 위해 도정 핵심 사업의 완수·단단한 도정 당부... 민선 8기 마무리 총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선 8기 핵심 도정 현안의 성공적 마무리 방안과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대응, 지출 구조조정 등 도정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선 8기 핵심 도정 현안의 성공적 마무리 방안과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대응, 지출 구조조정 등 도정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주요 과제의 연속성 확보와 차질 없는 마무리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심의에 적극 대응해 2027년 국가예산 삭감을 막아 내고 신규 공모사업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현대차의 8조 9,000억 원 투자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개정과 1조 원 규모의 피지컬 AI 사업 조율 금융 중심지, 율리프 유치 등 주요 과제를 짚으며 “임기 마지막 날까지 쟁점이 새어 나가지 않고 민선 9기 도정으로 단단히 이어지도록 세심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역설했다.

김 지사는 매립 면적이 조정되고 목표 연도가 2040년으로 앞당겨지는 새만금 MP 전면 재검토 동향을 거론하며 “실현 가능한 사업에 국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리면서 “우리 도의 입장이 담긴 MP 실행력 제고 방안”을 건의하고, 계획 재수립이 늦어져 새만금 핵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재정 효율성을 끌어올릴 대책도 구

체화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흐름에 보조를 맞춰 “새로운 사업 수요에 대응하려면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과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과감히 손질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해 세출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실무자들이 직접 나서 사업 전반을 촘촘히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8월 말부터 7월 초로 이어지는 도정 전환기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 맡은 업무를 철저히 챙겨달라”며 “금융중심지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민선 8기 동안 쌓아온 값진 성과들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실·국·이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책임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정은 계속되고 도민을 위한 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부담 던다

도,자부담 보험료 전액 지원... 이달 말까지 신청·예산 소진 시 마감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풍수해보험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손해보상사회공헌협의회의 지원과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제도를 연계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풍수해보험 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시설과 집기는 최대 3,000만원, 재고자산은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도는 기존 풍수해보험 지원제도에 더해 소상공인 자부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정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기간 내 풍수해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약 1,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운영 보험사인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을 통해 가능하며, 풍수해보험 가입과 함께 자부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과 경영안정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시군 핵심사업 특례 발굴 본격화

전문가 컨설팅 통해 입법 논리 보강... 피지컬 AI·자율주행·웰니스관광 등 미래 성장동력 특례 검토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례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15일 전주 소셜캠퍼스 온 전북에서 ‘시군 특례 발굴 전문가 컨설팅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 핵심사업의 전북특별법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시군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특례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와 입법 논리를 구체화하고 정부 부처 협의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와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전북연구원, 캠퍼스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대학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별 실현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했다.

이날 컨설팅은 완주군 진안군 고창군이 제안한 4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완주군은 차세대 산업으로 주목받는 피지컬 AI 분야 육성을 위해 실증단지 지정 근거 마련과 입시허가·실증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다부처에 걸친 복합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고 산업 실증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진안군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산간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 산악노면형 무인 자율주행 이동수단 시범사업 추진과 독자적인 인공·운영 권한 확보 방안을 검토했다.

고창군은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로 활용된 웰니스 관광 거점 조성을 목표로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확대 특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은퇴 인구나 해외 자본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참석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협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필요성을 반영한 입법 논리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위임 등 사후 관리 체계까지 포함한 전략적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6월 중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7월에는 특례사업발굴추진단과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전북특별법 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번에 논의된 시군 핵심 특례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견인할 주요 과제”라며, “도와 시군,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해 정부 부처가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노인학대 예방·노인인권 증진 유공자 표창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10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산에 나섰다.

기념식에는 어르신과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노인인권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노인학대 예방 영상 상영,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증진 유공자 표창,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 이어 노인학대사태평정위원회 위원장인 박형운 변호사가 ‘학대 피해노인 형사절차상 권리보호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노인학대 대응 역량 강화와 권리 보호 방안을 공유했다.

이에 앞서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는 지난 1일과 10일 순창시장, 전북대학교 구정문 부안군 홈마트 일원에서 홍보물 배부와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며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활동을 펼쳤다.

한편 노인학대 피해를 입었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신고하면 전문상담원의 상담과 현장조사, 보호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도,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안전관리체계 점검... 안전점검위원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안전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증사업의 안전한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에 앞서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안전점검위원회 위원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실증사업별 안전조치 수립 현황과 안전점검 계획을 검토하고, 실증 추진 일정과 계획의 적정성, 예상 위험요인 등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는 기능성식품 분야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 농생명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3

개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 계획이다. 특히 기능성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섭취하는 제품과 관련된 분야인 만큼 실증 단계부터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실증사업별 안전관리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들은 실증사업별 안전조치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수행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증사업 추진 전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인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구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여름철 해수욕장 수질조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질조사는 군산 선유도해수욕장, 고창 구시포·동호해수욕장, 부안 격포·고사포·모항·변산·위도해수욕장 등 도내 8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 항목은 장염 등 수인성 질환과 관련 장구균과 대장균이다.

조사는 해수욕장 개장 전인 6월부터 폐장 후인 9월까지 진행된다. 도내 해수욕장은 오는 7월 3일 부안군을 시작으로 7월 10일 군산시와 고창군이 개장 예정이다. 도는 개장 전 수질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즉시 재검사를 실시해 개장 여부를 결정하고, 개장 기간 중 수질 이상이 확인되면 입욕금지 안내방송과 경고 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도 공개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26-89호

(특정)빈집 조치명령(철거명령) 재공고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 5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해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해 철거명령을 통지할 수 없기에 ‘행정결치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명: (특정)빈집 조치명령 공시송달 공고
- 법적근거: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 5 및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연번	소유자(관리자)	위 치	용도	구조	조치내용
1	미상	정읍시 신대인동 2동리 153-5 (정읍시 신대인동 장교2길 42)	창고	목구조	빈집철거
2	미상	정읍시 신대인동 신동리 153-5 (정읍시 신대인동 장교2길 40)	주택	목구조	빈집철거
3	미상	정읍시 신대인동 우암리 425	주택	목구조	빈집철거
4	미상	정읍시 신대인동 우암리 90	주택	목	빈집철거
5	미상	정읍시 장부면 차반리 503-4	주택	목구조	빈집철거
6	미상	정읍시 장부면 차반리 503-1, 503-3	주택	목	시멘트골벽조 빈집철거
7	김○기	정읍시 동행면 산성리 505	주택	목구조	빈집철거
8	권○철	정읍시 농소동 350-1	주택	목	빈집철거
9	오○준	정읍시 양매동 829	주택	목	시멘트골벽조 빈집철거
10	미상	정읍시 양매면 창평리 103-1	주택	목	빈집철거

- 공고대상: (특정)빈집 소유자관리자
- 공고기간: 2026년 6월 16일~8월 18일(6일간)
- 공고방법: 전담 시군구계사관 및 정읍시청 홈페이지
- 기타사항
 - 상기(특정)빈집에 대해 입간 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 5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적법 철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읍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63-539-81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